

청주지방법원 2021. 12. 24 선고 2021가단5693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충북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서원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신인순

피 고 1. A

2. B

3.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엽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수현

변 론 종 결 2021. 12. 10.

판 결 선 고 2021. 12. 24.

주 문

1.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피고 A는 29,803,571원 및 그 중 29,637,514원에 대하여 2021. 3. 8.부터 2021. 7. 14.까지 연 1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C는 19,869,047원 및 그 중 19,758,343원에 대하여 2021. 3. 8.부터 2021. 8. 13.까지 연 1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망 D와 피고 B 사이에 2020. 9. 25.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B는 망 D에게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 9. 28. 접수 제4028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와 사이에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순번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대출예정금액(원)	거래은행
1	2018.11.28.~2019.11.26.	20,000,000	20,000,000	㈜E
2	2019.10.28.~2020.10.27.	20,000,000	20,000,000	
3	2020.5.28.~2023.5.26.	10,000,000	10,000,000	

나. D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원고의 신용보증 하에 (주)E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원고가 (주)E에 보증 채무를 이행하게 되면,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대위변제금액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2018. 5. 1. 이후 연 10%), 추가 보증료, 법적절차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D는 원고의 신용보증 하에 (주)E로부터 합계 5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2020. 10. 28. 원리금지급을 연체하는 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원고는 E에 2021. 3. 8. 합계 49,395,858원(19,164,667원 + 20,165,134원 + 10,066,05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는 또한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하여 104,592원의 법적절차비용을 지출하였고, 172,170원의 추가보증료가 발생하였다.

라. D는 2020. 9. 25. 형수인 피고 B와 사이에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 9. 28. 접수 제4028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D는 2020. 11. 4. 사망하였다. 망인의 딸인 F는 2020. 12. 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년단590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2020. 12. 21. 위 신고가 수리되었고, 망인의 처인 피고 A는 2020. 12. 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년단589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20. 12. 22. 위 신고가 수리되었으며, 망인의 어머니인 피고 C는 2021. 8. 3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년단231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21. 10. 20.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10호증, 을 1, 2, 4,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 C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피고 A는 구상금 29,803,572원[= 49,672,620원(= 49,395,858원 + 104,592원 + 172,170원) × 3/5] 중 원고가 구하는 29,803,571원 및 그 중 원금 29,637,514원(= 49,395,858원 × 3/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21. 3.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21. 7. 14.까지는 약정

연체이율인 연 1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C는 구상금 19,869,048원[= 49,672,620원(= 49,395,858원 + 104,592원 + 172,170원) × 2/5] 중 원고가 구하는 19,869,047원 및 그 중 원금 19,758,343원(= 49,395,858원 × 2/5)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인 2021. 3.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21. 8. 13.까지는 약정 연체이율인 연 1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피보전채권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는 원고의 망 D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아직 구체적으로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보다 앞서 이미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피보전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있었고, 망 D와 피고 B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직후인 2020. 10. 28. 망 D가 대출계약의 원리금지급을 연체하였으며, 실제로 원고가 2021. 3. 8. 망 D의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망 D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망 D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망 D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사해행위 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망 D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D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B에게 매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꿈으로써 채무초과상태를 초래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한 법률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 B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 B의 선의 항변

- 1) 피고 B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선의였다고 주장한다.
- 2)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법률행위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은 수익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다11963 판결 등 참조).

을 6,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 D와 피고 B는 가까운 인척관계인 점, ② 망 D는 2020. 7.경부터 췌장암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그 치료비도 마련하기 어려웠고, 피고 B는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③ 망 D는 피고 B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의 일부로 피고 B의 남편인 G로부터 병원비 명목으로 차용한 1,6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 B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B의 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망 D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이를 취소하고, 피고 B는 망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김수영

별 지

1동의 건물의 표시

충청북도 충주시

동[도로명주소]
 충청북도 충주시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번호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 제3층 호 73.65㎡

대지권의 표시 충청북도 충주시 답 545㎡
 대지권의 종류 소유권
 대지권비율 8분의 1 (68.125)

